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459호

「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7. 20.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「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개정('26.6.8시행)에 따른 청원업무 총괄 부서 등 변경 사항 반영

2. 주요내용

가. 중소기업부 청원업무 주관·처리부서 변경(안 제2조 제1항)

나. 중소기업부 청원심의회 구성 변경(안 제4조 제2항 제1호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9일까지 중소기업부(규제개혁법무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tngml214@korea.kr

2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
3) 팩스 : 044-204-736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(전화 : (044) 204 - 737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